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Q 폐기물재활용의 경우 폐기물처리기한 여부는?

당사는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신고 및 허가를 취득하여 조업중인 폐기물재활용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원료로 사용중인 일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후 보관하여 재활용하는 종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처리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처리규칙 31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보관기준에 의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시 준수사항을 준수시 처리기한은 무관한지요?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 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 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의 처리기한은 30일(의료폐기물의 경우 7일)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60일입니다.

Q 토양오염도검사의 주기는?

현재 2만 리터 지하탱크 5기를 보유하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5만 리터 1기, 경유 5만 리터 2기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완공이 되고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이후 토양오염도검사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시설의 주기에 맞춰 가는지,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두 시설이 각각 다른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저장시설(탱크)을 신규로 설치하여 증설했을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유출 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내에 설치년도가 다른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가장 오래된 시설의 완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Q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계량기 설치 및 정도관리가 법정 의무사항인지?

저희 회사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 작성 관련하여 C-1, C-2 방식으로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별 계량기 설치 및 정도관리가 법정의무 사항인지요?

지정한 검사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에 의한 제도이나, 교정검사는 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정밀·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기와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 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마모·내용 년수 경과 및 사용 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를 위한 임의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A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귀사에서 사용하신 C-1, C-2 모니터링 방법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별표 15 명시된 근사법에 의한 활동자료 수집방법입니다. 동 지침에는 근사법을 통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경우 '근사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 배출시설 단위로 측정기기의 신규설치 및 정도검사/관리 일정 등의 사항을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관광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따라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계량기의 설치 및 정도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신규 신고대상인지?

기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수산물 가공을 해오고 있는데 금번 사정에 의하여 공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인근부지(다른 지번)에 배출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배출시설)은 창고 등 폐수배출이 없는 타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된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폐수 배출량이 같을때,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 신규 신고대상인지요? 신규신고 대상이면 건축물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에 기존 공장에서 공장가동은 가능한지요?

Q 측정장비의 정도검사?

환경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07-5호, 2007. 5. 3)에 의거 매년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도검사를 받는 장비 중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교정검사를 받는 장비에 대해선 이렇게 교정검사를 받은 장비를 다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정도검사는 장비의 사용유무만 판단을 하는 검사이고 교정검사는 이 장비에 대한 오차까지 나타내줘서 따로 정도검사를 안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해서요.

A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의 폐수배출시설을 인근 다른 지번에 신축하면서 기존시설을 폐쇄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배출시설은 신축되는 배출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가동하시고 폐쇄하시면 될 것입니다.

A 정도검사는 형식승인 받은 구조·규격과 성능이 유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검사인 반면, 교정검사는 특정조건 하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물적 척도 또는 측정시스템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정도검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정도검사는 형식승인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